

# 國際物品賣買契約下の 損害賠償金 算定에 관한 研究

吳世昌\*

- 
- I. 序論
  - II. 損害賠償金 算定을 위한 原則
  - III. 損害賠償金 算定方法
  - IV. 問題點과 解決方案
  - V. 結論
- 

## I. 序論

오늘날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고의건 과실이건 이행과 관련한 해태로 인한 계약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가 국내법 또는 국제무역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손해배상금(damages)은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제 가운데 하나로서 대인구제(對人救濟)에 속한다.

본 논문은 계약이행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원칙과 산정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의 계약준거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s of Goods Acts : 이하 SGA라 한다)과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이하 UCC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참고하여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 : 이하 CISG라 한다)과 CISG의 해설적 성격이 강한 국제상계약의 원칙(principles of Int'l Commercial Contract : 이하 PICC라 한

---

\* 계명대학교 통상학부 교수.

다)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발생을 바라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산정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을 재 인식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을, 제3장에서는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을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손해배상금 산정원칙과 산정방법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금에 관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높은 UCC와 CISG를 중심으로 개괄적 비교와 함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자료 분석방법에 의한다.

## II. 損害賠償金 算定을 위한 原則

### 1. 國內法

#### 1) SGA

SGA에 의하면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청구권은 매도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취할 수 있는 바,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각된 물품의 대금청구소송과 그렇지 못한 경우 수령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이다.

SGA, 50(1)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불법으로 물품의 수령과 대금지급을 해태하거나 거절한 경우, 수령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매도인이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SGA 하의 매도인에게 허용되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절한 구제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도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과 대금지급을 해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매도인은 49(1)에 의한 대금청구소송 아니면 50(1)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SGA 51조와 53조에 의하면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인도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인도된 물품의 조건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금청구가 가능하다.

소유권이 이전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매도인의 구제가능 방법과는 다른 인도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소유권이전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의 구제방법과 같으며, 손해배상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인도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와 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경우 매수인의 청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매도인의 물품인도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청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양 당사자들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청구원칙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으로 SGA 50(2)와 51(2)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은 통상적인 경우에 매수인(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당연한 결과인 추정손실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행위와 손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손해에 대해 행위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remoteness of damage)원칙에 근거하여 재무법정(the Court of Exchequer)에서 다루어진 방앗간 제분기 크랭크축 수선과 관련한 방앗간 주인과 마차군과의 운송계약 상의 불이행과 관련한 *Hadley v. Baxendale*사건<sup>2)</sup>을 담당한 Alderson B경의 다음과 같은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양 당사자간의 계약을 일방이 위반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과 관련하여 타방이 수령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동 위반으로부터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자연히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합리적인 금액이거나 통상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양 당사자들이 그러한 위반으로 있을 수 있는 결과로써 합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손해금액이어야 한다(“where two parties have made a contract which one of them has broken, the damages which the other party ought to receive in respect of such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such as may fairly and reasonably be considered either as arising naturally, i. e.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 from such breach of contract itself, or such as may reasonably be supposed to have been in the contemplation of both parties, at the time the contract made, as the probable result of the breach of it.”)

1) Atiyah, P. S, *The Sale of Goods*, 6th ed., Pitman, 1982, p. 332, 360.

2) [1954] 9 Exch. 341, at P.354.

일방의 위반으로 인한 통상의 사건과정에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이러한 손해배상금산정원칙을 the rule in *Hadley v. Baxendale* 또는 rules as to remoteness of damage라고 한다.<sup>3)</sup>

## 2) UCC

UCC, 2-714(1)과 2-715(2)는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2-714(1)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에 관한 일반원칙, 즉 매수인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결정에 따라 통상사건의 과정에서 매도인의 위반에 기인한 일체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715(2)는 매도인의 위반에 기인한 간접손해배상금으로 계약체결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아야 할 사유를 가졌고, 대체물품의 구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합리적으로 금지될 수 없는 일반 또는 특수요건과 필요에 기인한 모든 손실과 책임담보위반에 기인한 사람이나 소유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예측불가능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제한에 관한 재술(Restatement : 이하 Rest.라 한다) §351에 의하면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측할만한 사유를 가지지 못한 손실의 보상은 손해배상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손실은 사건의 통상과정에서 또는 위반한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유를 가졌는 통상적인 사건과정에서가 아닌 특별한 상황의 결과로 인한 위반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위반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에 따라 입은 손실 또는 상황에 따라 사회정의를 불균형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손실만의 보상을 법정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Rest.에 의하면 법정은 손해배상금을 예측가능한 손실에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익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UCC와 같이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보상에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sup>4)</sup>

3) Guest, A. 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Clarendon Press, 1984, p.496.

4)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 2nd*,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1, p.135.

## 2. 國際法

### 1) CISG

74조는 하자물품과 인도지연<sup>5)</sup>으로 생긴, 즉 계약해제 전 계약위반<sup>6)</sup>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이익손실<sup>7)</sup>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로서 입은 손실과 동등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보상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기본철학이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자신이 처해졌을 경제적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위반을 주장하는 자를 취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sup>8)</sup> 물론 하자물품의 인도가 주요한 계약위반을 구성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5조 7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 PICC

CISG의 74의 손해배상금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의 보완 또는 해석원칙으로서 기능을 하는 PICC 7·4·1-4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7·4·1은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불가항력,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불이행이 면책되는 경우와 이행곤란<sup>9)</sup>(hardship)과 같이 손해배상금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이행의 경우 피해 입은 일방에게 기타구제<sup>10)</sup>와 병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 Honnold, J. O, *Uniform Law for Int'l Sale*, Kluwer, 1982, p.405.

6)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물품위반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제사유를 결정할 때 자신의 이행이 사소한 하자인 일방은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아니 된다(Honnold, J. O, *op. cit.*, p.254).

7) 이익손실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손실의 개념이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Krieter, A.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l Sale of Goods*, Kluwer, 1989, p.475.

9) 계약균형의 근본적인 변경(fundamental alteration of equilibrium of the Contract)의 경우를 의미한다.

10) 예컨대 보완, 오보인정에 따른 신문정정보도 등을 말한다([http:// 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

이러한 손해배상금 청구권은 계약불이행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기밀유지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체결전기간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7·4·2는 전액보상은 물론이고 희망이익손실 그리고 타방이 입은 손실,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의무증가와 자산의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다.

7·4·3은 손해배상금보상은 합리적으로 명확한 손해에 근거해야 하는 바, 그 예로 손해의 존재와 손해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으며, 손해는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조항은 계약 불이행 당사자에게 일어나지 아니하였거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널리 알려진 손해의 명확성요건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명확성 요건을 손해의 인정 전제로 불이행과 손해와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7·4·4는 손해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측가능성의 개념은 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PICC에 포함된 각종 손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불이행이 고의적인 위협이나 총체적 해태에 기인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허용하는 특정국가의 법체계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ICC 상의 규정은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예측가능성의 개념은 협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Ⅲ. 損害賠償金 算定方法

#### 1. 國內法

##### 1) SGA

##### (1) 매도인

매수인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 당연한 결과인 손실을 계산하

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SGA 50(3)에 의하면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문제가 되는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의 한도는 계약가격과 물품을 수령할 때의 계약가격과 시장 또는 시가간의 차액이어야 하고, 수령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할 때의 시가, 즉 시장 또는 시가와 계약가격 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매매할 수 있는 시장, 즉 이용 가능한 시장이란 다양한 견해가 있는 바, *Punkirt colliery co. ltd. v. lever*<sup>11)</sup>사건에 의하면 문제의 물품이 매각될 수 있는 장소로, *Heskell v. Continental Express Ltd*<sup>12)</sup>사건에선 특정장소에서의 특수한 거래수준으로, *thompson ltd v. rovinson(gunmakers)ltd.*<sup>13)</sup>사건에선 동 시장에 맡겨진 모든 물품을 쉽게 흡수할 정도로 물품에 대한 충분한 수요로, *Charter v. Sullivan*<sup>14)</sup>사건에선 물품이 확정된 소매가격에 의해서만 매각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로 각각 정의되었다.<sup>15)</sup>

이를 종합해 볼 때 매매할 수 있는 이용가능시장(available market)이란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거리의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만나 관련물품을 쉽게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매매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시장은 협의적이거나 기술적인 의미로 정의하려는 기도는 금물이며, 매도인이 대체구입자를 그리고 이러한 대체매매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장존재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느 시장이 관련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관련 장소, 즉 시장은 물품이 계약에 의하여 인도되어진 장소가 관련장소임이 *hasell v. bagot, shakes & lewis ltd.*<sup>17)</sup>사건이 입증해 주고 있다.

11) [1878] 9 ch. D. 20. 25.

12) [1950] 1 All E. R. 1033, 1056.

13) [1955] Ch.177.

14) [1957] 2. Q. B. 117, 128.

15) Reynolds, F. M. B, Harris, D. R, and Guest, A. G, *Chitty on Contract*, Sweet & Maxwell, 1977, p.70.

16) Harris, D. R, *Benjamin's Sale of Goods*, 2nd. ed. Sweet & Maxwell,. 1981, p.666, 667.

시가(the market or currency price)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직면한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매수인의 구입가격이며,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물품의 인도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어느 날짜의 시가가 관련 시가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매수인의 물품수령거절이 물품이 수령되어야 하는 시기에 일어난 경우 50(3)이 정확하게 적용되어 매도인은 계약가격과 그 당시의 시가간의 차이를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는 한층 어려워지나 물품이 수령되어야 하는 시기의 시가를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50(3)의 마지막 부분인 수령거절시기를 무시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행거절날짜와 인도가 수령되어야 하는 날짜간에 시가가 상승한 경우 관련 시가는 인도가 수령되어야 하는 일자에 적용되는 시가이다. 따라서 시가가 인도일자보다 늦은 시기에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거절하였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매도인은 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산정을 할 권리가 없다.

반면에 시가가 이행거절일자와 물품이 수령되어야 하는 일자간에 하락하는 경우, 이행거절이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다. 이행거절이 인정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손실을 경감시킬 의무 하에 있어 하락한 시장에서 즉시 재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하락시가가 관련 시가이다. 그러나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인수되어야 하는 날의 시가가 관련 시가이다.

이상의 시가원칙에 입각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산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재 매각 가능한 경우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50(3)에서 말하는 시장가격원칙은 매수인의 수령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이 시장에서 물품을 매각한다면 매도인이 입을지 모르는 손실에 원칙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정적 매가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서 물품을 재매각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i) 재매각이 실질적으로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물론 아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재매각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다

17) [1954] Lloyd's rep 65.



면, 계약가격과 시가간의 차액보다 오히려 계약가격과 시가보다 낮은 재매각가격간의 차이를 매도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길 원할지 모른다.

ii) 반면에 재매각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루어진다면, 계약가격과 시가보다 높은 재매각가격간의 차액만이 손해배상이 되어야 함을 매수인이 주장할지 모른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령불이행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체구입자를 발견할 경우와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물품을 유보한 경우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제50조(3)상의 원칙과 매도인이 실제 시장에서 물품을 재매각하는 경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령불이행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즉시 재매각한 경우, 매도인은 시가보다 낮은 이러한 재매각가격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즉시 재매각한 경우 추정컨대 매도인이 자신의 손실을 경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로 하여금 최저시가로 매각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매도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계약가격과 시가분의 차액보다 자신이 많이 보상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특수한 경우에 손해경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실제 취득한 가격에 재매각하는 것이 자신에게 합리적이었음을 주장하는데 매도인이 성공한다면, 재매각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았다고 법정이 판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통상적인 방법과 비교하면 모순하며, 실질적인 재매각가격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은 매도인이 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매매가능한 시장이 없음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반 시에 즉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감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분명하지 아니하다. 물론 매수인이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도인은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있어서와 똑같은 증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였음을 매도인이 입증할 수 있음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그가 시장가격이하로 재매각한다면, 그는 손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자신이 얻을 이

윤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제50조(3)상의 원칙과 매도인이 실제 시장에서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은 계약가격과 재매각가격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정이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액의 인정이야말로 매도인이 입은 손실의 진정한 측정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campell mostyn ltd v. barnett trading co.* 사건에서 인정되었다.<sup>18)</sup>

② 시장이 없는 경우와 시가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경우 또는 50(3)의 손해배상금산정을 위한 추정 원칙이 특수한 이유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원칙규정인 50(2)의 규정이 효력을 발휘해서 적용될 수 있다.

③ 시장시가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특별손해배상금 산정원칙  
54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시장이 있으나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50(3)의 방법의 적용이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달라져야 하는 바, 예컨대 신제품의 경우 시장사정이 매도인이 매매할 기회를 잃을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없는 경우로서 제품을 이미 확보 내지 제조한 경우 50(3)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계약가격과 위반일자의 물품가격간의 차액임을 *harlow & jones ltd v. panex ltd.*<sup>19)</sup>사건이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따른다해도 시장이 없기 때문에, 위반 때에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가끔 생길 것이나, 법정은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물품이 특별주문에 따라 제조된 경우 제품은 이런 물품에 대한 시장이 없음으로 인해 전혀 가액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손해배상청구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금청구권리는 그 물품이 외관상으로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개조 후에도 쓸모가 없고, 매매할 수도 없는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항상 자신의 손해를 경감시켜야 하며, 그가 약간의 개조에 따라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없는 경우로서 물품을 이미 제조하거나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50(3)

18) [1954] 1 lloyd's rep 65.

19) [1976] 1 wlr 459.

이 적용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산정방법은 계약가격과 물품을 확보하거나 제조하는데 드는 비용간의 차액, 즉 자신의 이익이 된다.<sup>20)</sup>

(2) 매수인

51(3)에 의하면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문제가 되는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한도는 계약가격과 물품을 인도할 때의 시가, 즉 시장 또는 시가간의 차액이어야 하고, 인도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때의 시가, 즉 시장 또는 시가와 계약가격간의 차액이어야 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은 인도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인도된 물품의 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구성된다.

① 인도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선정방법

<1> 시가 원칙에 의한 손해배상금

시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매도인에 의한 손해배상금청구시와 똑같은 이 추정원칙이다. 즉, 손해배상금은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의 물품의 시가를 참고하여 부과된다. 그리고 시가와 계약가격간의 차액을 매수인에게 인정함으로써 물품이 인도되었다면 매수인이 취할 수 있었던 입장으로 매수인의 입장을 법정이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시가가 계약가격보다 낮다면 물론 매수인은 명목적인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가원칙은 매수인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제 3자에게 물품을 재매각하기로 이미 계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체되지 아니한다.

상거래에서 혼한 일로서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정기간을 계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 매도인은 허용된 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계약을 위반한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허용된 마지막 날은 5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부과는 반드시 허용된 마지막날의 시가를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CIF계약에 있어선 51(3)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는 서류가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와 같이 CIF계약 하에서 서류인도기간이 일정기간 허용된 경우 손해배상을 부과하기 위하여 참고하는 날짜를 확정하는

20) Atiyah, P. S, *op. cit.*, p.330~336.

날짜는 바로 서류제공을 위해 허용된 일정기간 종료일이다.

비록 이상과 같은 시가원칙이 영국에선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다해도, 시가원칙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공평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매도인이 인도를 불이행한 바로 그 날짜의 시가와 계약가격과의 차액을 참고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할 경우 바로 그 날짜로 시장에서 매수인이 실제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때 매수인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한 근거로서 대체물품의 가격을 참고케 하고 있는 UCC, §2-712의 경우와는 달리 영국법은 대체물품을 위하여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대금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일반원칙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매도인의 인도불이행 후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 분명히 매수인은 높은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반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감소될 것이다.

<2> 시장이 없는 경우와 시가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금 매도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산정방법과 같이 50(2)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시가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특별손해배상금

i) 물품의 시장이 있는 경우의 특별손해배상금

물품의 시장이 있는 경우 시가라는 손해배상측정자 이외의 자로서 손해배상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문제된 물품을 위한 시장이 있는 경우라도 예외적인 경우로서 자신이 이행할 수 없는 예약판매에 따라 그가 입은 손실을 나타내는 손해배상액을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예약판매는 손해배상금 산정시에 무시되어야 함이 시가원칙이다. 따라서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당연한 손실이 아닌 그러나 당사자들이 아는 독특한 상황으로부터 일어나는 손실에 근거한 권리인 특별손해배상금을 5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i) 물품의 인도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지급해야 하는 운임에 대한 손해<sup>21)</sup>

(ii) 매매계약시 계약의 내용이 특정 운송수단상의 특정물을 규정하고 재

21) *e. braude(london) ltd. v. porter* [1959] 2 lloyd's rep. 161.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sup>22)</sup>

ii) 물품의 시장이 없는 경우의 특별손해배상금

물품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은 시가에 의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방법은 매수인이 재매각을 위하여 구입하는 상인인지 여부 또는 자신의 사용을 위한 구입인지 여부에 부분적으로 좌우되고, 한편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불이행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을 실질적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시기의 물품의 가액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품의 가액은 매수인이 재매각하기로 계약한 가격에 따라 산정됨이 추정적이다.

사용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대체물을 구입하는데 지급한 추가비용 또는 구입한 대체물을 자신의 사용목적에 위하여 조정 또는 수선하는데 지급한 추가비용이 산정기준임이 추정적이다.

② 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책임담보를 위반하거나 또는 책임담보위반으로 매수인이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것이 부득이한 조건위반에 매도인이 해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53조가 손해배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규정을 근거로 하여 조건이나 책임담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연인도시 책임담보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개인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경우의 지연 인도시 매도인의 책임담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지연기간 동안 매수인이 대체물을 임차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또는 그 기간동안 대용품 없이 지낸 결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상인으로서 재매각을 위하여 구입한 경우의 지연 인도시 매수인의 책임담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의 산정방법은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의 시가와 물품이 실제 인도될 때의 시가간의 차액이다.<sup>23)</sup>

22) *in re r & h hall ltd. and w. pim(junior) & co's arbitration* [1928] all er pep 763.

23) *koufos v. czarnikow* [1969] 1 ac 350.

<2> 품질에 관한 책임담보 위반시 손해배상금

규정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인도된 물품의 가격과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였다면 물품이 가질 수 있었던 가격간의 차액을 매수인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다음과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i) 매수인에 의한 재매각이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ii) 53(3)이 실질적으로 인도된 물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련 일자는 매수인에게 인도된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해도, 이러한 사실은 실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i) 책임담보위반이 처음 발견되는 것은 인도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

(ii) 하자가 발견되기 전에 물품이 부구매자에게 발송되어 인도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물품이 검사 없이 인도되어질 수 있음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부구매자에게 인도된 시기와 장소에서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sup>24)</sup>

iii) 53(3)의 추정원칙은 시가와 관련이 없다. 즉 이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보상받는 것은 물품의 하자보상이므로 손해배상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가치의 부족에 근거해야 한다.

iv) 품질이나 책임담보의 위반은 없으나 물품이 계약기간 동안 선적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불법으로 B/L back date한 CIF계약하의 지적의 경우, 지적을 알기 전에 거절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계약가격과 인도일의 시가간의 차액을 나타내는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sup>25)</sup> 그리고 허위 B/L 때문에 기만당하였으나 매수인이 물품이 도착한 때 지적을 알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서류를 거절하기에 너무 늦었다해도, 그는 물품이 도착할 때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거나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령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가격과 인도일자의 시가간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시가하락으로 생긴 손실은 매도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sup>26)</sup>

24) *van den hurk v. martens & co. ltd.* [1920] q kb 850. 수령장소를 인도장소로 대체하고 있는 UCC §2-714도 이런 취지이다.

25) *james finlay v. nv kwik hoo tong* [1929] 1 kb 400.

26) *kwei tek chao v. british traders & shipper ltd.* [1954] 2 qb 459

<3>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손해배상금

53 (3)은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과 재매각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간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똑같은 손해배상금 선정방법이 양자에 적용됨이 추정적이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실질적인 물품의 가격과 책임 담보된 물품의 가격간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런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재매각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와는 상이한 형태를 취하거나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필요한 수준까지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순히 물품을 수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그 하나의 계산방법이다. 이런 경우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인도된 물품의 가격과 책임 담보된 물품의 가격간에 차이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 간접손실의 경우 손해배상금

간접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도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보다 품질의 책임담보위반과 보다 많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하자물품은 사용에 따라 위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간접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형태는 물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할 때 더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27)</sup>

2) UCC

(1) 수령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708에 의하면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에 의한 수령불이행이나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매수인의 위반의 결과로 절약된 비용 (expenses saved)을 공제한 간접손해<sup>28)</sup>배상금을 포함하여 제공시의 장소의 시가와 미지급 계약가격간의 차액이 된다.<sup>29)</sup> 이러한 방법이 이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매도인을 두는데 부적절한 경우, 손해배상금산정은 간접손해배상금인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공제(duel allowance)와 재매각 지급이나 대금에 대한 정당한 신용(duel credit),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

27) Atiyah, P. S, *op. cit.* pp.366~374

28) 손해배상금 = 차액(제공시 장소시가와 계약가격간의) + 간접손해배상금 - 절약비용

29) §2-710에 의하면 위반에 따라 물품의 반송이나 재매각 기타방법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위반 후 물품의 운송, 보호, 보관에 따라 그리고 인도불이행에 따라 각각 지급한 일체의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이다.

한 완전이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합리적인 간접경비(reasonable overhead)를 포함한 이익이 된다.<sup>30)</sup>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고 707 비행기 2대를 \$4,000,000(대당 \$2,000,000)에 팔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707시가가 \$1,700,000일 때 위반을 하였다. 위반 후 매도인은 \$1,600,000에 한 대를 매각하였다. 그리고 재판 중에는 나머지 1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재판시 중고 707비행기의 1대당 가격이 \$1,400,000로 하락하였다. 이런 경우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매도인인 보잉사를 두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다.

보잉사는 시가원칙에 따른다면 대당 \$300,00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잉사는 자신이 재매각한 1대의 비행기에 대한 시가인 \$1,700,000을 받지 못하고 현재 보관 중인 1대에 대하여는 \$1,400,000이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시가원칙에 따른다면 취득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즉 \$3,600,000(손해배상금인 \$600,000 + 매각대금 \$ 1,600,000 + 재매각가능성대금 \$ 1,400,000)은 이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상태로 보잉사를 두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보잉사의 중고비행기를 구입하여 개장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대당 \$1,300,000일 경우 이 직접비용과 계약가격간의 차액인 \$ 700,000은 순이익이다. 따라서 \$ 1,600,000에 재매각한 비행기에 관해 보잉사는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

$\$700,000(\text{이익} + \text{간접비용}) + \$1,300,000(\text{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 - \$1,600,000(\text{재매각지급이나 대금에 대한 정당한 신용}) = \$400,000(\text{손해배상금})$

그리고 재매각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700,000(\text{이익} + \text{간접비용}) + \$1,300,000(\text{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 - \$1,400,000(\text{재매각지급이나 대금에 대한 정당한 신용}) = \$600,000(\text{손해배상금})$

## (2) 인도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712에 의하면 인도의 해태나 이행거절을 통한 매도인의 위반에 따라 매수인은 대체물구입후 대체물구입비용과 최초의 계약가격간의 차액<sup>31)</sup>을 보상받을

30) 손해배상금 = 완전이행에 의한 이익(합리적인 간접비용포함) + 정당한 공제 - 정당한 신용

31) 손해배상금 = 차액(계약가격 - 대체물구입가격) + 간접손해배상금 - 절약비용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실질적인 대체물구입과 매매계약간에 차액을 통해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행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동일한 경제상태로 매수인을 처하게 할 수 있다.

(3) 수령한 물품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713에 의하면 매수인은 유사한 계약가격과 시가간의 차액<sup>32)</sup>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피해 입은 매수인은 전형적으로 자신이 위반한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지 못한 물품을 소유하려는 욕구를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체물품을 구입하려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매수인이 대체물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러한 보상원칙이 적용될 것이다.<sup>33)</sup>

## 2. 國際法

### 1) CISG

#### (1) 대체거래시

##### ① 기본공식

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대체품이 실제 구입되었거나 매도인이 실제 제품을 재매각한 때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적인 공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 즉 대체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지급한 가격, 또는 재매각하여 취득한 가격간의 차액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그는 이 외 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기타 손해배상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ii)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상기의 기본공식은 상업적 입장에서 볼 때 대체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2) 손해배상금 = 차액(매수인이 위반사실을 안때의 시가와 계약가격간의) + 간접손해배상금 - 절약비용

33) White, J. J, & Summers, R. S,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1977, pp.230~231, p.176, p.180.

대체거래가 최초의 거래장소와는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위반의 결과로서 절약된 일체의 비용을 차감하고, 증가한 수송비와 같은 비용증가분을 인정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iii) 대체거래, 즉 재매각 또는 대체구입이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은 마치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76조와 적용가능하다면 74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iv) 손해배상금 주장이 상기 iii)의 공식에 따라 76조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계약가격과 시가간의 차액은 먼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 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가 계약가격과 재매각에 따라 수령하거나 또는 대체구입에 대해 지급한 가격간의 차액이 75조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물품을 인취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러한 인취시의 시가가 해제시의 시가를 대신해서 적용된다.

## ② 기본공식의 제한

계약해제 후 대체거래시에 적용되는 이러한 기본공식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른다.

i) 매도인에 의한 재매각 또는 매수인에 의한 대체구입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반한 당사자가 계약가격과 대체거래 가격간의 차액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거래, 즉 재매각 또는 대체구입이 본 조항의 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대체거래는 사정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고가격에 재매각이, 또는 사정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저가격에 대체구입이 각각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대체거래는 해제된 거래를 대체하는 한, 품질, 신용, 또는 인도시기와 같은 문제에 관해 동일한 매매조건일 필요가 없다.

ii) 재매각이나 대체구입이 본 조항하의 손해배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시효는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기간임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효는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실제 계약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시작되지 아니한다.

## ③ 추가 손해배상금 산정공식

75조는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기본공식에 의해 보상받지 못

하는 추가손해<sup>34)</sup>를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손해는 74조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74조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추가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보편적인 산정공식은 불일치한 물품의 수량, 또는 대체물품 구입 필요성의 결과에 다른 추가비용과 물품이 계약날짜까지 인도될 수 없어 대체거래를 통해 구입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액은 74조에 명시된 예측가능성에 의해 종종 제한됨을 알아야 한다.

## (2) 시가거래시

### ① 기본공식

76조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대체거래가 75조 하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대안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75조나 76조 중 하나를 택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위한 기본공식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은 81(1)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의 추가이행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리고 81(2)에 따라 이미 인도된 것의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다.<sup>35)</sup>

이렇게 함으로써 매수인은 대체물품의 구입을 또는 매도인은 상이한 구입자에게 물품의 재매각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7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가격과 재매각, 또는 대체구입가격간의 차액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재매각 또는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해도, 또는 어느 것이 위반한 계약의 대안으로 재매각 또는 대체거래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매각 또는 대체가 75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후 합리적인

34) 왜냐하면 PICC 7.4.1과 7.4.5-6의 해설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은 피해 입은 당사자를 치부캐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제원칙에 따라 75조와 76조에 의한 기본공식은 최저보상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4.2의 해설에 의하면 불이행시기와 재판시기간에 일어나는 손해의 변화도 고려하게 되어 있다.([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

35) 만약 계약이 분할 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73(3)은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이미 인도된 인도 분에 관한 반환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단 이미 인도된 분이 상호의존관계로 인해 이러한 인도 분이 계약체결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인도된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76조는 이러한 공식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격은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장소의 적용되는 시가이다.

그리고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날짜는 계약의 해제를 처음으로 선언할 수 있었던 날짜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가의 결정을 위한 관련날짜를 계약이 해제된 날짜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날짜가 바로 처음으로 해제선언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일방이 물품의 인취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러한 인취시의 시가가 해제의 시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장소의 결정은 31조에 의해 결정된다.

동 규정에 의하면 특히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인도는 매수인에게 운송을 위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목적지 인도계약의 경우 인도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루어진다. 시가란 계약금액으로 계약명세서상의 물품을 위한 시가이다. 따라서 시가의 개념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시가<sup>36)</sup>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해도, 이러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품의 시가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제기한다. 만약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장소에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적용되는 가격은 물품의 운송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체로서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장소의 가격이 된다.

## ② 추가 손해배상금 산정공식

76조는 75조와 마찬가지로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위의 기본공식에 의해 보상되지 아니하는 이익손실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추가손실은 74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74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계약가격이 CIP \$80,000이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기본적인 위반, 즉 주요한 위반(fundamental breach)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계약을 처음으로 해제할 수 있었던 날짜에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던 장소에서의

36) 엄격한 의미에서 시가란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합리적인 거리의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만나 관련물품을 쉽게 흡수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하는 이용가능시장(available market)에서의 형성되는 가격이다 (Guest, A. G, *op. cit.*, p.666). 그러나 이때의 시가의 개념은 이미 언급한대로 시가거래에 대비한 PICC 7.4.6에 의한 시가여야 한다.

매도인의 손해배상금액은 \$ 5,000이다.

또, 달리 예를 든다면 계약가격이 CPT \$60,000이었다. 매도인의 인도불이행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계약이 처음으로 해제될 수 있었던 날짜에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던 장소에서 계약설명서의 물품을 위한 시가는 \$63,000이었다. 그리고 매도인의 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추가비용은 \$2,500이었다. 이 경우 74조와 76조에 의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은 \$ 5,500이다.<sup>37)</sup>

## 2) PICC

### (1) 대체거래시

CISG 75조와 실질적으로 같지만 7.4.5를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할 경우 피해 입은 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간의 차액과 추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손해를 경감시킬 의무나 상관습이 피해입은 당사자에게 대체거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대체거래를 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이라 할 수 있다.

주의를 요할 것은 대체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선주 자신이 자신의 선박을 수선하도록 위임된 어떤 조선소가 수선이 불가능함으로 자신의 선박수선을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이 불이행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타방이 수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계약해제 후 일방이 똑같은 시기에 이행 할 수 있었던 기타계약을 위한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상실한 거래액 보상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체거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당하거나 서두르는 행위로 인해 불이행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① 추가손해배상금

피해 입은 당사자가 두 계약간에 보상받을 수 있는 원칙은 최저보상권(a minimum right of recover)이다. 따라서 피해 입은 당사자는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추가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역시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A 조선소는 7월 1일 현재 \$ 500,000상당의 수선을 위해 자신의 드라

37) Kritzer, A. H, *op. cit.*, p.483~492..

이득크에서 B선주의 배를 수선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B는 드라이득크가 8월 1일부터만 이용 가능한 것을 6월 1일 알았다. 따라서 B는 계약을 종료시키고, 수선을 위해 C조선소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이 소요된 협상이 마침내 \$ 700,000에 타결되었다.

이 경우 B는 수선비의 차액인 \$ 200,000을 A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오랜기간동안 선박의 이용불능에 대한 보상과 이 기간동안 자신이 지급한 비용을 간접손해배상금으로 차액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2) 시가거래시

실질적으로 CISG 76과 같은 7·4·6 규정의 목적은 대체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이행을 위한 시가가 존재할 경우 손해의 입증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런 경우 손해는 계약가격과 계약종료시의 시가(時價)간의 차액과 동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① 시가의 결정방법

시가(時價)는 문제가 된 물품이나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이다.<sup>38)</sup> 이는 반드시는 아니나 가끔 형성되는 시장의 가격(市價)이다. 시가(時價)의 입증은 전문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입수 가능할 수 있다.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시가(時價)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장소는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 장소이거나 동장소에 시가(時價) 없는 경우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소이다.

### ② 추가손해배상금

피해 입은 당사자가 계약가격과 계약종료시의 시가(時價)간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원칙은 7.4.5에서와 같이 최저보상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입은 당사자는 계약의 종료결과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추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역시 취득할 수 있다.<sup>39)</sup>

38) 우리 나라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나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또는 사단법인 응용통계연구소 등에서 매달 50,000물품에 대해 발표하는 물가를 의미한다.

39) [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

## IV. 問題點과 解決方案

### 1. 概括的 比較

간접손해배상금에 관한 대부분의 법의 기원은 영국의 고전 사건인 1854년 *hadley v. baxendal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의 일반이론이라 할 수 있는 예측가능(foresseeability or improbability)이론<sup>40)</sup>은 계약위반에 따라 보상을 허용하되, 기업을 위험을 다소 감소시키는 효과와 특수한 상황의 경우 계약위반에 따라 희생자들에게 허용되는 특별손해배상금을 고려하여 보상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동사건에서의 Alderson경의 주장은 영국과 미국의 법정들이 “위반한 자가 특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선 특수한 상황의 통지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을 두고 한 세기 이상 격론을 벌이기에 충분하리 만큼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sup>41)</sup>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일반 원칙의 원리는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UCC와 CISG의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원칙과 관련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어도 2-712와 75조는 거의 분간이 없을 정도로 같다.<sup>42)</sup>

---

40) Honnold, J. O, *op. cit.*, p.406.

41) Kritzer, A. H, *op. cit.*, p.491.

42) 예컨대, *Hadley v. baxendale* 사건에선 “...may fairly and reasonably be ... arising naturally ... 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reasonably be supposed. ... the probable result of the breach ... , which ... reasonably contemplate ... ordinarily follow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under these special circumstances so known and communicated ...로, SGA 50(2), 54(2)에 의하면 “... loss directly and matuarally resul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from the seller’s(or buyer’s) breach of contract”로, UCC 714(1)와 715(2)에선 “... the loss resul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from the seller’s breach ad determined in the manner which is reasonable” 또는 “... any loss resulting from general or particular of contracting had reason to know ... 로, CISG 74에선 “... which the party to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re forese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light of contrat”로, PICC 7.4.4에 의하면 “... which it foresaw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UCC 2-708과 2-713과 76조를 비교해 보면 양법 모두 타방이 완전히 이행한 것과 똑같은 상태로 타방을 두려고 하고 있는 점은 같다. 그러나 2-713의 경우 시가의 적용시기를 “매수인이 위반을 안 때의 시가”로, 2-708의 경우 “제공시의 장소의 가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가의 적용시기를 “해제시”나 “물품의 인취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76조와는 거리가 있다.<sup>43)</sup>

그러나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에 대해 용어상의 차이<sup>44)</sup>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점등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의 경우 UCC는 상해(personal injury)에 대해 2-715(2)가 인정하는데 비해 CISG는 74조상에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sup>45)</sup>

## 2. 問題點과 解決方案

이상의 개괄적 비교에 근거하여 이하에서 UCC와 CISG상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UCC

#### (1) 수령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708(1)과 관련하여 첫째로 2-706에 의한 매도인의 재매각권에 따라 재매각한 매도인은 2-708(1)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UCC의 제정사에 의하면 2-706에 따라 재매각한 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8(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New York Law Revision Commission은 2-708(1)에 따라 소송을 통해 횡재를 얻지 못하게 될 매도인을 염두에 두고서, 2-706에 따르기 위해 신의성실<sup>46)</sup>로 기도하였으

43) Kritzer, A. H, *op. cit.*, p.491.

44) 예컨대 2-715(2)에선 “reason to know”로 표현되어 있으나, 74에 의하면 “foresaw or ought to ... the breach of the contract”로 되어 있다. 이양자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awareness of substantial probability”의 의미인데 반면 후자의 경우 “awareness of possible consequences”의 의미이다.

45)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은 CISG 5조에 의해 CISG의 적용제의 대상이다.

46) 신의성실(good faith)을 White & Summers는 불안정한 용어(slippery phrase)이나 1-201(19)와 1-203을 통해 신의성실을 추정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생각기준(the old white heart and empty head standard)을 제시하고 있다(White, J. J, & Summers, R. S, *op. cit.*, p.177).



나 성공하지 못한 매도인은 2-708(1)에 호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길 원하였다.

둘째로 금지조항이 없는 한 계약이행에 의해 수익을 올릴 수 없었고, 2-708(2)에 의한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한 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8(1)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가?

셋째로 2-708(1)에 대하여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기타 매도인의 구제와의 관계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1-106은 기본적인 정책으로서 구제선택이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구제는 그 성격상 누적적 성격이 필수적이며 위반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08(2)와 관련하여 본 조항은 어떤 경우를 위한 것이며, 어떤 종류의 증거를 원고나 피고가 자신의 입증책임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규정은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본 규정상의 매도인은 표준가격의 물품을 매각하는 매도인(lost volume seller), 중개인 매도인(jobber seller),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합의한 매도인(components seller)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개인 매도인은 2-708(2)에 호소할 수 있는 매도인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 즉 ① 계약물품을 결코 취득하지 아니하는 매도인이며, ② 위반을 안 후 물품을 취득하지 아니하려는 자신의 결정이 2-704(충당도 못되고 완성 못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상업적으로 불합리하지 아니함을 충족시켜야만 2-708(2)에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적용 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설명하기란 정답이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이런 경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2-708(1)에 의한 손해배상금 산정이 이행하였을 경우와 똑같은 상태로 자신들을 두지 못할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원고는 자신을 위해 어떤 이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708(2)하에서의 배상금을 수령해야 한다.<sup>47)</sup>

(2) 인도불이행 또는 이행거절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712조와 관련하여 첫째로 2-712(2)상의 “...but less expenses...”의 의미는

47) White, J. J., & Summers, R. S, *op. cit.*, p.220~225.

매수인이 대체구입시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체물 계약의 선적 조건과 최초계약상의 선적조건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우 위반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이 처해졌을 상태로 두는데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최초계약 하에서 자신의 수중에 물품을 두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로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신의성실과 대체물의 정의이다. 신의성실의 정의는 1-201(19)와 1-203에 규정되어 있으나, 불안정한 용어이며 깨끗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생각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체물에 대하여 주석<sup>48)</sup>에 의하면 관련물품과 동일하지 아니하나 특수한 경우의 상황하에서 합리적 대체로서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과 인도조건에 있어 위반한 계약상의 내용과 대체물구입계약이 다를 경우 역시 그 상황에 맞는 위의 합리적 기준이 대체물의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물의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매수인이 일련의 구입을 할 때 몇 개의 계약가운데 어느 것이 대체되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대체물품이 대체되었으나 계약물품과 다른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금 방법을 조정할 것인가?

셋째로 해석상의 문제는 합리적 기준(the standard of reasonable)이다. 주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적절한 대체물품 구입의 기준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매수인이 신의성실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였는지 여부인지 사용된 대체물구입방법이 매우 저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매우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나중에 입증한 요책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다른 규정에 의하면<sup>49)</sup>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무엇이 합리적인 시간인가는 그러한 조치의 성격, 목적 그리고 상황에 좌우됨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는 대체물을 구입한 매수인이 본 조항을 무시하고 2-713의 적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712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실제이행과 똑같은 상태로 피해 입은 매수

48)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erson o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1958, p.205.

49) UCC 1-204(2), SGA 56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합리적인 기간)이란 사실의 문제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무엇이 사실이냐는 case by case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인을 두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일의 목적, 즉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취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런 요건이 만족되었다면 2-713에 의한 소송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수령한 물품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713과 관련하여 첫째로 외형상 주요한 문제는 인도장소, 즉 시장으로서 시가가 측정되는 장소이다. 매도인이 인도 전에 위반을 하거나 이행거절을 한 경우에 관련시장(the relevant market)은 제공장소이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그 어느 곳에도 제공장소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한 연구의 출발은 2-503, 2-504, 2-507, 2-509, 2-319<sup>50)</sup> 등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로 해석상의 문제는 매도인의 위반의 결과로 절약된 비용의 의미이다. 예컨대 운송비용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3가지의 계약이 있는 바, 바로 ① 물품이 선적되었으나 결국 거절된 FOB선적지 계약 ② 물품이 선적되지 아니한 FOB선적지 계약 ③ FOB도착지 계약 등이다.

이런 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위반의 결과로서 절약된 비용은 무엇인가?

①의 경우 2-713 손해배상금산정공식은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을 위한 시장을 도착지장소로 하며, 이 경우 선적비용은 계약가격과 시가가격간의 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기타 간접손해배상금은 2-715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 ②의 경우 시가는 2-713에 따라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제공장소로서 측정되어야 하며, 매수인은 새로운 계약에 따라 선적비용을 지급해야 하기에 매도인의 위반의 결과로서 절약된 비용은 없다. ③의 경우 제공장소와 도착장소는 같으므로 매수인은 선적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반의 결과로서 절약될 선적비용은 없다.

셋째로 매수인이 대체구입을 하였으나, 2-712에 의한 구제를 무시하고 2-713하의 계약가격과 시가간의 차액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 경우 매수인은 2-712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711은 매수인에게 인도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sup>51)</sup>

50) Anderson, R. A, *Anderson on the UCC*, 3rd, ed., 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 1981, p.419.

51) 이러한 2-712와 2-713과의 관계에 대하여 Peters교수는 비판하고 있다(White, J. J. & Summers, R. S, *op. cit.*, p.175~190).

## 2. CISG

### 1) 대체거래와 재매각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75조에 따라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본 조항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사전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선택한 것을 위반한 당사자가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데 정규적으로 종사하고, 그가 위반 후의 구입이나 판매와 위반한 계약간의 분명한 연계가 없을 경우, 구제의 선택에 대한 통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제의 선택에 관한 문제점은 관습과 관행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9조 2항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sup>52)</sup>

### 2) 시가거래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첫째로 본 76조의 주요한 목적은 본 조항에 따라 부가되어야 하는 가격은 계약해제를 선언한 당사자가 처음 계약해제권을 가진 때의 시가이어야 함에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추상적인 손해배상금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항이 진정 피하려는 목적인 소송상태의 여지는 남아 있다.

대개 일방은 계약해제권이 존재하는지가 분명하기 전에 가끔 계약해제권을 가지려 하며, 이는 사전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특별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본 조항에서 말하는 시가의 적용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둘째로 만약 매도인이 문제물품의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거나 매수인이 이러한 물품에 대한 한정된 수요를 가진 경우,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이 재매각을 하였거나 매수인이 대체구입을 할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의 물품에 대한 시장을 항구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수많은 구입 또는 매매계약 가운데 어느 것이 위반한 계약을 대체하는 계약인지

52)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 국제기관에 의한 제도적인 관행 또는 관습과 거래당사자들 간의 거래관행, 또는 관습이 있을 수 있다.

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의 물품에 대한 시장을 항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75조의 활용상의 어려운 문제는 손해배상금추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74조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

셋째로 (1)항에 의하면 “해제시의 시가”와 “물품의 수령시의 시가”가 있는 바, 특별히 물품의 수령시의 시가로 규정한 데 대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가?

넷째로 UCC 2-708(2)에 의하면 시가공식이 매도인에게 이행이 이루어졌을 상태로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완전이행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경상비를 포함한 이익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액을 그에게 허용하고 있는데, 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해제시의 시가”와 “물품수령시의 시가”제도를 둔데 대한 동기, 특히 “물품의 수령시의 시가”로 한 것은 매수인의 인도 후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매수인이 시세 하락 후에 매도인의 희생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수령시의 시가”원칙은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부당하게 물품을 거절하므로 물품을 수령하고 계약해제를 선언하는 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sup>53)</sup>

다섯째로 양 규정에 공히 적용되는 문제로 추가손해배상금 가운데에는 정신적인 손해보상의 포함문제와 그 대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 PICC 7.4.2(완전보상)에 의하면 고통, 유쾌한 삶의 상실, 심미적 손상, 명예나 평판의 침해에 기인한 손해 등을 제시하고 그 대상으로 주로 예체능계나 서비스의 경우를 입증의 필요성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 이행당사자들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 V. 結 論

이상에서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hadley v. baxendale*사

53) Kritzer, A. H, *op. cit.*, p.486, p.491~492.

건에 근거한 SGA, UCC, CISG, PICC를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산정원칙을 개괄하였고, 국내법으로 SGA와 이에 근거한 UCC를, 국제법으로 PICC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CISG와 PICC를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을 그리고 UCC와 CISG의 개괄적 비교와 더불어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로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금 산정은 피해 입은 당사자로 하여금 치부케하지 아니하면서 이행의 경우와 동등한 상태로 두기 위한 최저보상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손해배상금은 기타구제와 병행이 가능하다.

③ 손해배상금은 선택적 성격이 있다.

④ 손해배상금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양 법간에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나 구체적인 표현방법에 있어서나 손해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손해는 명확해야 할뿐만 아니라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⑦ 불이행의 입증은 단순한 입증 즉, 사실만의 입증으로 족하다.

⑧ UCC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사안별로 구체적인데 비하여, CISG 상의 손해배상금 산정방법은 포괄적이다.

⑨ 본 연구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 그 의미가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또 하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므로 보다 유용한 손해배상금 산정방안을 업계에 보급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 2nd,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1.
- Anderson, R. A., *Anderson on the 3rd*, ed., The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 co., 1981.
- Atiyah, P. S., *The Sale of Goods*, Pitman, 1982.
- Guest, A. G., *Anson's Law of Contract*, 26th ed., Clarendon Press, 1984.
- Guest, A. G., *Benjamin's Law of Goods*, 2nd, ed., 1981.
- Harris, D. R., *Benjamin's Sale of Goods*, 2nd, ed., Sweet & Maxwell, 1981.
- Honnold, J. O., *Uniform Law of Int'l Sales*, Kluwer Law & Taxation Publishing, 1982, 1991.
- Houtte, H. V., *The Law of Int'l Trade Law*, Sweet & Maxwell, 1995 5.
- Debattiatia, C., *Incoterms in Practice*, ICC Publishing S. A, 1995.
- Indira Carr, *Principles of Int'l Law*, Cavendish Publishing Ltd., 1999.
- Kritger, A.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 Kluwer, 1990.
- Lusk, H. F., Hewitt, C. M., Donnell, J. D., *Business Law*, Richard D. Irwin, Inc., 1978.
- Schmittoff, C. M., *Export Trade*, 9th, ed., Stevens & Sons, 1995.
- Schmittoff, C. M., *International Trade Usage*, Institute of Int'l Business Law & Practice, 1987.
- Thomas, M., *Temperley Merchant Shipping Acts*, 7th ed., Sweet & Maxwell, 1978.
- White, J. J., & Summers, R. S.,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1977.
- Williston, S., *The Law Governing Sales of Goods at Common Law and under the Uniform Sales Acts*, Revised ed., Baker, Voorhis, co, Inc., 1948.
- Reynolds, P. M. B., Harris, D. R., and Guest, A. G., *Chitty on Contract*, Sweet & Maxwell, 1977.
- 裴俊逸, “UN 統一賣買法上の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2000. 10  
[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http://www.cisg.law.pacc.edu/cisg/principles/uni_74.html)  
CISG

UCC

PICC

SGA

吳世昌 貿易契約論 동성사, 1991

\_\_\_\_\_ 國際物品去來論 학지사, 1998

\_\_\_\_\_ 國際貿易慣習法 학지사, 1988

Bill, T., The Sale of Goods Act. explained, 2000, The stationery office



ABSTRACT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Damages under Int'l Sale  
Contract of Goods**

Oh, Se Chang

This study summed up general rules for measuring damages based on SGA, UCC, CISG, PICC legislated by on the base of English decision of Hadley v. Baxendale

Concluding marks as follows :

① General rule for measuring damages is a standard rule that is developed to place the aggrieved party in as good a position as if the party in breach performed the contract.

② Damages may also be accompanied by other remedies

③ Damages has alternative character

④ Damages give the aggrieved party full compensation

⑤ It is enough for the aggrieved party simply to prove the non-performance for damages

⑥ Occurrence of harm must be reasonably certain and a direct consequence of non-performance

⑦ while Rule for measuring damages an UCC is concrete CISG is comprehensive.

⑧ Although rule of UCC and CISG for damages measurement is a similar in many aspect but there are in expression and range of damage between them.

⑨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give researchers the opportunity to develop in depth and their report of research also contribute chance to perform business their effective oversea's trade

Key Words : Damages, Sale of Goods